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응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24

발의연월일: 2021. 9. 29.

발 의 자:조응천·강준현·김교흥

김철민 • 문정복 • 박상혁

소병훈・오영환・조오섭

천준호 • 한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의 지원을 위해 건설임대(국민,영구,행복주택)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, 건설·매입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습니다.

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자본금 납입액은 연평균 4.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2020년 말 기준 36.3 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은 2021년 하반기에는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 자본금 40조원을 초과하고 2023년에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됩니다.

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

(안 제4조).

법률 제 호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중 "40조원"을 "50조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자본금) 공사의 자본금은 4	제4조(자본금) <u>5</u>
0조원으로 하고, 그 전액을 정	0조원
부가 출자한다.	